

2025 총회 결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북미주 개혁교회(CRC 교단) 사무총장실은 교회들과 노회들을 위해, 지난 4년간 총회 후에 “자주 묻는 질문(FAQ)”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 담긴 질문들은 총회 총대들과 교회들, 그리고 CRC 교인 및 리더들로부터 받은 질문들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2025 총회는 2022년 인간 성 관련 결정에서 비롯된 여러 사안들을 다뤘습니다. 신앙고백에 대해 “거리낌 없이 온전히 동의한다”는 표현의 의미, 직분자 서약을 얼마나 자주 갱신해야 하는가, 미국개혁교회(RCA 교단)와의 향후 관계, 칼빈대학교와 칼빈신학교가 그 교수진 및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조건 등이 올해 총회에서 다뤄졌으며, CRC 교단 정식 매거진 <배너>의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2025 총회는 또한 온라인교회, 교회개척의 미래, 조력자살에 대한 대응, 양국에 걸친 교단으로서의 화합 등, 미래지향적이며, 사역 및 선교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정직과 존중 속에서 진행되었고, 특별히 많은 기도로 충만했던 2025년 총회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총회 마지막 날, 총회장은 총대들과 참석자들에게 자신과 타인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그분께서 행하고 계신 일을 바라보도록 도전했습니다.

이 FAQ 문서를 작성하며 저희는 최대한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많은 교회 리더들과 교인들의 우려는 여기서 다를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드백에 따라 일부 답변이 갱신되거나 새로운 질문과 답변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나 저희에게 연락하기 원하시면, communications@crcn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곧 발행될 2025 총회회의록과 노회에 제공될 요약본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 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아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롬 15:13)

그리스도 안에서,
재커리 킹 사무총장

Table of Contents

교단 매거진 <배너> The Banner

1. 총회는 <배너>의 사명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2. 편집장이 사임했다고 들었습니다. 총회가 사임을 강요한 건가요?

직분자 서약 Covenant for Officebearers

3. 총회가 교회헌법 제5조 보칙인 직분자 서약서에 “유보없이” 서명해야 한다는 것을 변경했나요? 그렇다면 그 변경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4. 총회는 직분자 서약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5. 총회는 제한적 정직 처분을 받은 교회에서 온 노회원의 참여를 제한하라는 2024 총회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직분자 서약에 서명하지 않은 직분자들에게도 의석을 허용한 토론토 노회를 징계했나요?

대의원회 및 이사회 COD and Other Boards

6. 대의원회 예외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7. 칼빈대학교와 칼빈신학교 교수 및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8. 총회는 앞으로 CRC 교단 및 산하기관 이사회의 후보자 지명 방식을 어떻게 변경했나요?

세계 교회 와의 관계 Ecumenical Relationships

9. 총회는 CRC 교단과 개혁교회연합(Alliance of Reformed Churches)과의 관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10. 총회는 미국개혁교회(Reformed Church in America)와의 관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11. RCA 목회자가 CRC에서 사역할 때 직분자 서약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이중국가 교단 Being a Binational Church

12. 총회는 CRC 교단을 CRC 캐나다와 CRC 미국으로 분리하자는 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교회개척 Church Planting

13. 교단 선교부 Resonate Global Mission은 아직 교회개척을 지원하나요?
14. 총회는 교회개척의 다음 단계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나요?
15. 제게 CRC 내 교회개척을 위한 아이디어/실행 방안/제안이 있습니다. 이 전략 개발 과정에 제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교회 Virtual Churches

16. 온라인 교회 특별위원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 총회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17. 조력자살 특별위원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총회는 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총회의 평결 Synodical Pronouncements

18. 총회 결정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전도목사 Commissioned Pastors

19. 총회는 전도목사의 자격 요건을 변경했나요?

20. 이 자격 요건은 기존 전도목사에게도 적용되나요?

목회자의 배우자 Pastoral Spouses

21. 총회에서는 목회자의 배우자에 대한 더 나은 돌봄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배너> The Banner

1. 총회는 <배너>의 사명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총회는 <배너>가 “CRC 교단의 공식 출판물”로서의 역할과, 때때로 교단의 입장과 상충할 수 있는 윤리적·도덕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루는 것 사이에 긴장감이 존재함을 인식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다양한 관점이 개별 기사 형태로 온라인에 공유되거나, 매거진 전체의 맥락 없이 접하게 될 경우, 사람들이 CRC 교단의 신학적·윤리적 입장을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는 <배너>가 교단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의 일부를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회는 <배너>가 독립적인 매거진이 아닌, CRC 교단 공식 출판물임을 재확인하며, 총회의 위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 총회는 <배너>가 “이슈들에 대한 책임있는 논의를 이끌 것”과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와 반응을 표현하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표현을 위임 사항에서 삭제했습니다. 또한 <배너>가 “더 넓은 기독교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분명한 개혁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교단을 공적으로 대표하고... CRCNA의 공식 입장을 대변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배너> 편집진은 “교회와 사회의 트렌드”를 다룰 자유는 여전히 보유하되, 이를 교단의 보다 큰 신앙의 틀 안에서 다뤄야 합니다(예, “우리의 신앙고백 전통 안에서... 비판적 사고를 격려한다”). 또한 “일부 개인, 교회, 혹은 산하 기관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관련 문제, 필요, 우려 포함)을 독자들과 구독자들에게 알릴” 자유 역시 보장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집상의 자유는 이제 “CRC 공식 입장에 대해 적절히 인지하고 존중하며, 우리의 신앙고백에 따른 언약적 헌신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너>의 전체 위임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편집장이 사임했다고 들었습니다. 총회가 사임을 강요한 건가요?

아닙니다. 총회는 <배너> 위임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했고, 편집장이나 다른 편집진의 업무 효율이나 신실함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나 조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직분자 서약 Covenant for Officebearers

3. 총회가 교회헌법 제5조 보칙인 직분자 서약서에 “유보없이” 서명해야 한다는 것을 변경했나요? 그렇다면 그 변경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총회는 직분자들이 직분자 서약서에 “유보없이” 서명해야 한다는 기준의 요구 사항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과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함과 겸손함, 그리고 헌신으로 그들의 부르심을 따르기 원하면서도, 교단의 교리 기준 일부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총회는 ‘신앙고백에 동의하기 어려움’과 직분자들이 사역하면서 흔히 겪는 고민, 의심, 우려는 서로 구분되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신앙고백서에 대한 이해와 헌신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해 나갑니다.

총회는 교회헌법 제5조 a항 보칙을 수정하여, 직분자들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성경이나 신앙고백서의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신 요구되는 것은, 그들이 아는 최선의 범위 내에서 신조와 신앙고백서에 담긴 어떤 교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심각한 의심이나 확고한 반대 신념”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회는 교회의 신앙고백 기준을 존중하는 것이 은혜와 인내와 상충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현 절차와 조항들은 이미 성장을 위한 유연성과 목회적 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운실은 고유한 권위를 위임받았으며, 교회헌법은 그들에게 그라바미나(신앙고백에 대한 이의 제기)를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적합한 방향을 결정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총회와 노회는 교회의 신앙고백적 일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위임된 권위를 계속 유지합니다.

4. 총회는 직분자 서약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총회는 모든 노회에 대해, 각 노회 회의 시 모든 노회원들이 직분자 서약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024 총회가 모든 노회원이 매년 직분자 서약서에 재서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2025 총회는 이것을 조정하여 서약의 형식은 각 노회의 재량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노회에 처음 참석하는 직분자는 서명해야 하며, 그 외의 노회원들은 기립, 손들기 등 노회가 정한 방식으로 서약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25 총회는 또한 노회 모임에서 서약하는 행위는 우리를 하나되게 하는 신앙고백을 함께 기뻐하고, 예배로도 드려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5. 총회는 제한적 정직 처분을 받은 교회에서 온 노회원의 참여를 제한하라는 2024 총회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직분자 서약에 서명하지 않은 직분자들에게도 의석을 허용한 토론토 노회를 징계했나요?

총회는 토론토 노회 소속 다섯 교회로부터 제기된 항소를 받아드리며, 해당 노회의 행동이 총회 결정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회헌법이 회의체들의 결정은 “확정되고 구속력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토론토 노회가 2024년 총회 결정에 전적이고 즉각적으로 순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총회는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징계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기된 목회적인 우려에 주목했고, 총회 위원회에서 항소자와 피항소자 양측 모두 질의에 성실히 응답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의원회 및 이사회 COD and Other Boards

6. 대의원회 예외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총회의 회기 외 기간 동안 교단을 운영하는 대의원회(Council of Delegate)는 지난해 예외 정책을 폐지하고 새로운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대의원들이 CRC 신앙에 동의한다는 동의 성명 중 어느 항목이든 예외로 등록하고 대의원으로 섬길 수 있었으나, 이제는 후보자 지명 및 유보 사항 처리에 대한 새로운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절차에 따르면, 신앙고백에 대한 유보 사항을 가진 사람은 처음부터 대의원으로 섬길 수 없으며, 만약 섬기는 도중 유보 사항이 생기더라도, 한 번의 임기(3년) 이상 그 유보를 고집할 수 없습니다. 총회는 이러한 대의원회의 결정이 CRC의 신앙고백과의 견고한 일치를 보여준다고 판단하며 이를 지지했습니다.

7. 칼빈대학교와 칼빈신학교 교수 및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2024 총회의 요청에 응답하여, 칼빈대학교 이사회는 2025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신앙고백에 대한 동의 및 이견 처리 방식의 틀을 CRC 교단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교회와 대학이 각각 맡고 있는 고유한 영역과 역할을 존중하고자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칼빈대학교 이사회는 교단의 신앙고백 기준과 해석이 곧 대학의 기준이자 해석임을 재확인하며, 이사와

직원들이 개인적·전문적 삶에서 이러한 기준과 해석에 부합하도록 요구하는 정책과 실천이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학은 교수진을 위한 신앙고백 동의에 관한 새로운 성장 중심의 프레임워크를 도입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교회헌법과 더욱 밀접하게 일치되며, 신규 교수들이 개혁주의 전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받아들이도록 지원하고, 대학과 교회의 중요한 차이를 존중하면서, 칼빈대학교의 개혁주의 신앙 증언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회는 이러한 노력을 전반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칼빈대학교가 CRCNA 내에서 이사회, 교수진, 행정 리더들이 개혁주의적 기준을 따라 충실히 섬기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다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칼빈신학교 이사회는 직분자 서약에 대한 해당 교수진의 헌신을 강조하며, 신학교가 1991년 칼빈대학으로부터 분리된 이후로는 그라마비나 정책이나 “예외” 등록 절차를 두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총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을 고수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신조와 신앙고백을 예외 없이 전심으로 지지하고 변호하려는 칼빈신학교의 사역과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총회는 칼빈신학교 이사회에 대해, 정규 교수진 외에 가르침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이 CRC의 가르침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했습니다.

8. 총회는 앞으로 CRC 교단 및 산하기관 이사회의 후보자 지명 방식을 어떻게 변경했나요?

총회는 총회에서 임명하는 이사회, 위원회, 산하기관의 후보자들이 신학적, 윤리적, 전문적인 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이에 총회는 사무총장실에 각 기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 후보자 자격요건 및 은사에 대한 기준표를 요청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관련 교육 및 전문 경력, 영적 성숙과 도덕적 성실성, 예수 그리스도와 CRC 신앙고백에 대한 분명한 헌신. 총회는 기관마다 후보자 선정 절차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번 지침은 기존 절차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총회가 임명하는 모든 직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대치를 설정하고 기존 절차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세계 교회와의 관계 Ecumenical Relationships

9. 총회는 CRC 교단과 개혁교회연합(Alliance of Reformed Churches)과의 관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개혁교회연합(이하 ARC 교단)은 미국개혁교회(RCA 교단)를 떠난 여러 교회들이 모여 설립한, 비교적 신생 개혁교단입니다. 2025 총회는 CRC 교단 초청에 긍정적인 응답이 있을 경우를 전제로, ARC를 “교류하는 교단(church in communion)”으로 승인했습니다. “교류하는 교단”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CRC 에큐메니컬 관계 중 가장 밀접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지정된 교단은 CRC 및 산하기관들과의 공동 사역,

총회에서의 총대 교환, 성찬식에서 서로의 교인을 환영하고, 서로의 목회자들이 설교를 맡을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사역과 신앙 안에서 서로 격려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10. 총회는 미국개혁교회(Reformed Church in America)와의 관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총회는 세계 교회 및 타종교 관계 위원회(Ecumenical and Interfaith Relations Committee, EIRC)에 CRC와 RCA 간의 “교류하는 교단” 관계의 유익과 한계를 5년에 걸쳐 평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교류하는 교단”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CRC가 맺는 에큐메니컬 관계 중 가장 가까운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향후 5년 동안 CRC와 RCA 간의 사역 파트너십, 양 교단 산하기관 간 협력, “연합 교회(union churches)”, 목회자 교환, 그리고 Reformed Benefits Association(개혁교단 복지 연합회)와 같은 공동 사업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EIRC는 매년 총회에 경과 보고를 하며, 2030 총회에 보고서와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총회는 CRC 교회를 섬기는 RCA 목회자들을 통해 많은 유익이 있었던 것과, 두 교단 간의 오랜 협력 관계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총회는 RCA에서 온 에큐메니컬 총대들에게 “RCA가 모든 사안에 대해 보여 준 정직함, 신앙의 증언, 성실함에 대해 CRC가 깊은 애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직분자 서약을 통해 신학적 일치를 확인하는 것이 CRC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특히 동성애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한 것에 대한 RCA의 신앙 고백과 실천적 헌신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1. RCA 목회자가 CRC에서 사역할 때 직분자 서약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교회헌법은 이미 RCA 목회자가 CRC에서 사역할 경우, “청빙교회의 신학, 예전, 전통, 역사, 헌법, 그리고 목회 권징에 관한 지식이 있으며 동의”해야 하고, CRC 정책 중 필수 조항들이 RCA 목회자의 사역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교회헌법 제8조 보칙 D항 5-6). 그러나 총회는 교회헌법 제8조 보칙에 CRC에서 사역하는 RCA 직분자는 카운설, 노회, 총회의 규정에 따라 직분자 서약에 서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이중국가 교단 Being a Binational Church

12. 총회는 CRC 교단을 CRC 캐나다와 CRC 미국으로 분리하자는 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총회는 Meadowlands Fellowship CRC가 제출한 제안서의 사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으며, CRC 교단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총회는 국가를 기준으로 교단을 분리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총회는 교단이 이중국가 교단으로서 겪는 도전과 압박이 존재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캐나다와 미국 사역부 간의 조직적 관계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각 국가 사무국이 자국의 사역 맥락에 맞게 방향성과 운영권을 갖고 사역을 추진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총회는 교회헌법에 이미 이 제안서가 제기한 여러 우려들을 교회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총회는 캐나다 CRC의 사역적 노력을 격려하며, 캐나다 고유의 사역 기회들이 실현되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총회의 응답은 미국과 캐나다 양측 총대들의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를 받으며 전체 총회의 압도적인 승인을 얻었습니다.

교회개척 Church Planting

13. 교단 선교부 Resonate Global Mission은 아직 교회개척을 지원하나요?

교회개척은 Resonate의 사명과 전체 사역 가운데 여전히 핵심적인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Resonate과 CRC의 여러 사역부들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며 교회개척자들과 깊이 있는 협력을 이어 왔고, 이러한 헌신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에 걸쳐 Resonate의 재정 후원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균형 잡힌 예산 편성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향후 1년간 교회개척 사역에 대한 전체 재정 지원을 약 130만 달러(USD)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교회개척자들이 각자의 사역 맥락 속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 지원은 계속 제공될 예정입니다.

Resonate은 이와 같은 변화가 교회개척 사역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Resonate 리더십은 또한 선교부의 초점이 재정 지원 그 자체보다는 교회개척자들의 전문성 개발과 사역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있어 왔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그 방향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 재편은 전인적 평가, 코칭, 훈련, 리더십 개발, 지역사회 참여 등 교회개척자들과 더 깊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세워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향후 교회개척 사역의 실질적인 운용 지원은 노회와 후원 교회들을 중심으로 계속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 총회는 교회개척의 다음 단계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나요?

총회는 모든 교회가 교회개척 사역을 더욱 적극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Resonate 선교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각 교회 및 노회 내 교회개척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나아가 총회사무국에, 산하기관들 및 노회들과 협력하여 향후 10년간 CRC의 교회개척 사역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 계획, 전략, 재정 제안서를 수립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는 2025년 가을에 교회들과 노회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노회들이 자체적인 교회개척 전략을 개발하거나, 기존 Resonate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전략 개발에 대한 지원이나 추가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여러분 지역의 [Resonate Regional Leade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제게 CRC 내 교회개척을 위한 아이디어/실행 방안/제안이 있습니다. 이 전략 개발 과정에 제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교회개척은 우리 교단 전체가 함께 지원하고, 교회 간신을 위한 공동 사역으로 인식해야 할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어떻게 더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제안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지역의 [Resonate Regional Leader](#)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회 Virtual Churches

16. 온라인교회 특별위원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 총회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및 디지털 형태의 사역들이 확대됨에 따라, 2023 총회는 “총회사무국의 감독 하에 의도적으로 온라인에서만 모이는 교회, 즉 온라인교회의 가능성과 한계를 신학적으로 고찰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5 총회에 제출되었고, 총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총회는 CRC 교단 내에서 디지털 사역에 대해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전적으로 디지털 사역만 하는 이들은 모교회와 노회의 지원을 받도록 권면했습니다. 더불어 가능한 경우, 섬기고 있는 이들을 하이브리드나 대면 모임 쪽으로 이끌도록 노력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총회는 전적으로 디지털 또는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역을 교회라고 선언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동시에 온라인교회를 신학적으로 명백히 불가하다고 단정짓기에도

이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총회는 공동의 학습과 분별을 위한 네트워킹을 장려하며, 특히 온라인교회가 그 맥락 안에서 참된 교회의 표식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이어갈 것을 권장했습니다.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17. 조력자살 특별위원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총회는 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2023 총회는 “모든 형태의 조력자살에 대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보고서”(2023년 총회 회의록, p. 981)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사안에 대해 연구하고, 2025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회는 자신들에게 제기된 핵심 질문을 다음과 같이 이해했습니다: “의료적 조력을 받는 자살이 점점 더 널리 시행되고 승인되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기독교인은 이를 성경의 가르침, 의료적 상황 그리고 실천적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가?”

특별위원회는 총회에 [이 보고서\(한국어 요약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2025 총회는 보고서에 담긴 권고안을 승인하고, 이를 교회들에게 유익한 정보이자 지침으로 추천했습니다. 총회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고유하며 지속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인을 포함한 모든 생명과 특히 고통받고 절망적인 생명을 존중하고 돌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총회는 “의료적 조력자살의 합법화와 실행, 그리고 이를 미성년자에게까지 확대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CRC 교인들과 교회들, 노회들에 “고통, 장애, 죽음의 현실에 목회적으로 응답할 것과, 특히 임종 시 말기완화의료(palliative care)를 권장할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총회는 또한 CRC 교인들에게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어, 고통받고 취약한 이들을 돋는 사역에 참여할 것과, 이들을 위한 정부의 공적 돌봄 사역을 지지함으로써, 그들이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아울러 총회는 CRC 교인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 내 모든 사람들이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정책 결정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옹호 활동에 다시 헌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총회 평결 Synodical Pronouncements

18. 총회 결정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2021년, Chatham 노회(현 Ontario Southwest 노회)는 총회에 “총회 평결, 결정, 보고서, 입장, 조언이라는 여러 범주의 차이점과 그것이 교회에 미치는 구속력의 정도를 명확히

해 달라”는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2021 총회 안건집, pp. 350-51). 이 제안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기되었고, 2022년과 2023년 총회에서는 시간 부족으로 다뤄지지 못해 2024년 총회(2024년 총회 안건집, pp. 401-2)로 연기되었습니다. 2024 총회는 이 범주들을 명확히 정의하고, 2025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소그룹을 임명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보고서에 관한 응답이나 주어진 결정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성명이 채택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2025 총회는 보고서에 담긴 총회 결정에 관한 세 가지 큰 범주(아래 항목 2-4)과 추가된 네 번째 범주(아래 항목 1)이 포함된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 1) 신앙고백 해석(*confessional interpretations*)은 교회의 신조와 고백서에 담긴 교리를 명확히 해석하거나 설명하는 공식 성명 또는 선언입니다. 교회헌법 제5조에 따라, 이러한 신조 해석은 직분자(목회자, 장로, 집사)들이 그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함을 고백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정식 절차(그라바멘)를 따라야 합니다.
- 2) 교리적 확언(*doctrinal affirmations*)(때때로 ‘평결(pronouncements)’, ‘입장(positions)’, ‘결정(decisions)’, 또는 ‘공표(deliverances)’라 불림)은 교리, 윤리, 교회 정책 및 기타 중대한 이슈에 대한 총회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확언은 권위 있는 선언으로, 교회 공동체의 신앙과 실천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닙니다.
- 3) 판결적 결정(*adjudicatory decisions*)은 항소나 이의 제기, 또는 재판국이 소집될 경우 발생하는 특정 분쟁에 대한 응답으로 내려진 결정입니다. 총회는 이러한 결정이 포괄적이며 적용에 있어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4) 교리 적용(*doctrinal applications*)은 성경과 신조를 현대의 상황이나 맥락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총회가 “추가 연구를 위한 지침”, “현대적 신앙고백”, “목회적 조언”이라 부른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는 교회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표현하는 방식이지만, 신조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총회의 결정으로서 “확정되고 구속력을 가지지만(*settled and binding*)”, 각 지역 교회에서의 적용 방식에는 분별과 여지를 허용합니다.

전도목사 Commissioned Pastors

19. 총회는 전도목사의 자격 요건을 변경했나요?

교단 영입위원회는 교회헌법 제23조와 24조에 명시된 전도목사(*commissioned pastor*) 직의 현행 기준을 검토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전도목사 직분의 사용이 확대되고 역할이 복잡해졌고, 특히 조직 교회 단독목회자 혹은 담임목사로 임명되거나 말씀사역자(minister of the Word)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 안수(*bridge ordination*)”로 전도목사 직분이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2025 총회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의 자격 요건을 교단 전반에 걸쳐 보다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회헌법 제23조와 24조 보칙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표는 전도목사가 단독목회자로 사역할 때 필요한 훈련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단독목회자 혹은 담임목사 직을 맡고 있는 전도목사의 경우, 이제 말씀사역자로 안수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울러 총회는, 이러한 전도목사에 대해 단순히 직책 승인뿐 아니라, 자격 심사 시 총회대리인의 동의도 요구하도록 교회헌법 보칙을 개정했습니다.

20. 이 자격 요건은 기존 전도목사에게도 적용되나요?

이미 조직교회에서 단독목회 또는 담임목사 역할을 맡고 있는 전도목사들에게 이번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우려에 대해, 총회는 교회헌법 제24조 b항에 따른 “전환 안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요건은 새로 제24조 청빙을 받는 전도목사들에게만 적용되며, 현재 단독목회 또는 담임목사 직을 수행하고 있는 전도목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목회자의 배우자 Pastoral Spouses

21. 총회에서는 목회자의 배우자에 대한 더 나은 돌봄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총회는 각 교회와 노회에서 목회자 배우자들의 영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1년에 최소 \$500의 예산을 책정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재정 지원이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공동 기금 마련도 권면했습니다. 지역 담당 목회자들과 교회 방문단에게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만날 때 배우자의 영적·정신적 건강에 대해서도 함께 살필 것을 지시했고, 교단 사무실에는 교회와 노회가 목회자 배우자들의 영적 건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선별하고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